

이 보도자료는 2020. 1. 5.(일) 09:00[2020. 1. 6.(월)자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강남수  
전화 053-570-4390 / 팩스 053-570-4242

보도자료  
2020. 1. 3.(금)

제 목

###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사범 집중 수사 - 2019. 8. ~ 12 5개월 간 사법질서 저해사범 총 26명 적발 -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은 '19. 8.경부터 '19. 12.경까지 5개월 간 위증·무고·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사범 7명, 무고사범 10명, 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등 9명, 총 26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앞으로도 사법질서저해사범에 적극 대처하여 실체 진실 발견 및 사법질서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I

### 수사 배경

#### ● 위증, 범인도피로 진실 왜곡 및 사법 불신 초래

- 위증, 범인도피 등 범행은 진실을 왜곡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유발하게 하여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고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으로 인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 ● 증가하는 ‘허위 고소’ 에 대한 엄정대처 필요성

-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적인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허위고소의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함께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II 수사 결과

- 2019년 8~12월 5개월간 총 26명 인지(위증사범 7명, 무고사범 10명, 범인도피·소송사기사범 등 9명)

※ 4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기소, 10명 약식기소 등 총 26명 기소

## III 대표적 사례

- 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베트남인 2명 적발 -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직구속 기소

- 베트남인 피고인 A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 A가 ‘사실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 B가 A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나는 불법체류자이니, 합법체류자인 네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사실에서 피고인들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현행범인체포한 후 피고인 A를 범인도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피고인 B를 범인도피교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직구속 기소함

● ② 잘못된 의리와 인정 때문에 위증한 사례 - 前애인, 직장상사, 친구

- 前 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주부, 직장상사의 강제추행 범행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직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의리상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거짓 증언한 친구 등 다양한 유형의 위증을 밝혀내어 각각 기소함

● ③ 자신의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한 사례

- 피고인 A는 B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고, B는 사업상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자, 피고인 A는 직접 자신의 자금을 빌려주기는 곤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받도록 B에게 허락함
- B는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및 채권양도 통지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취지로 확인해주어 B의 사기대출에 동조함
- B는 대출금원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도주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는 B가 도주하였음을 알고 위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접하기 위하여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실제 확인했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나 B가 붙잡히고 피고인 A의 무고혐의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함

#### ● ④ 교도소 접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접견한 사례

- 피고인 A 구속기소 의견, 피고인 B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함
  - 교도소 접견녹취록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가 B에게 타인 명의로 교도소에 접견을 것을 부탁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B를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지하여 직구속 기소함
- ※ 수사과정에서 교도소 접견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함

#### ● 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례

-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후 그 집을 팔아 수익금 3,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안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 매도인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확인하고 소송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지하고 불구속 기소함

## IV

###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위증 ·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여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 끝.